

사회복지 주간 동향(23.8.22.~8.25.)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이동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짝반짝 사랑의 초인등 설치사업’ 진행

< 청각장애인과 난청 어르신 가정 10곳에 초인종과 경광등 합친 ‘초인등’ 설치 >



*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일 지역 내 청각장애인과 난청 어르신 가정 10곳을 대상으로 ‘반짝반짝 사랑의 초인등 설치사업’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힘

- 협의체가 올해부터 특화사업으로 진행한 ‘반짝반짝 사랑의 초인등 설치사업’은 청력 상태가 좋지 않은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초인등은 초인종과 경광등을 합쳐 만들어진 단어다. 밖에서 벨을 누르면 방안에 설치된 수신기가 LED 불빛과 진동으로 외부인의 방문을 알려줌
- 협의체는 초인등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

- 이 위원장은 “초인등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주변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함
- 협의체는 초인등을 지원받은 세대에 대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방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이동읍 맞춤형복지팀)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모현읍·상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가구에 보양식 전달



※ 모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상현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사진

- *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과 수지구 상현2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각 저소득 가구에 보양식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힘
 -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일 저소득 200가구에 보양식 꾸러미를 전달, 보양식 꾸러미는 간편히 조리해 먹을 수 있는 포장용 삼계탕·설렁탕·즉석밥·참치캔 등으로 구성
 -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독거노인 50가구 가정을 방문해 보양식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 이외 150가구는 유선으로 안부 인사를 전하고 우체국 택배를 통해 보양식 꾸러미를 전달
 - 이옥배 모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여름을 건강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양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전함
 - 읍 관계자는 “어려운 이웃에 보양식을 전달해 주신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함
 - 수지구 상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저소득 30가구에 보양식 꾸러미를 전달, 보양식 꾸러미는 삼계탕·계란·유산균음료·과일·김치로 구성, 협의체 위원들과 동직원들은 가정을 방문해 보양식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 확인과 함께 건강상담을 진행
 - 김부환 상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폭염으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취약 계층분들이 조금이나마 기력을 보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양식 꾸러미를 지원하게 됐다”며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기 바란다”고 전함
 - 상현2동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보양식 꾸러미를 지원해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협력해 취약계층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모현읍, 상현2동 맞춤형복지팀)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보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14호 업체 현판 전달



- *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명옥)가 보라동 중식당 삼국지(대표 장지희)를 착한가게 14호 업체로 지정하고 지난 11일 지역복지 협력 기관 현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힘
 - 동 협의체는 2020년 12월부터 협의체 특화사업에 협력하고 이웃돕기 정기기탁에 참여하는 13개 업체를 착한가게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한 바 있음, 이번에 14호로 지정된 착한가게는 지난 6월부터 매월 식사이용권 30인분을 기탁
 - 다른 나눔 업체의 정기기탁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본 장지희 대표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
 - 장 대표는 “그동안 어렵고 막연하게 생각해 기부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옆 가게 사장님이 꾸준히 기부하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내게 됐다”며 “조금이나마 이웃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함
 - 박명옥 동 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자발적으로 정기기탁에 참여한 업체에 감사드린다”며 “14호점과 같이 나눔의 선순환이 지역사회에 전파되도록 동 협의체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보라동 맞춤형복지팀)

4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죽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려운 이웃에 목욕탕 이용권



- *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3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목욕탕 이용권을 지원키로 하고 지역 내 소재한 대지스파랜드와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힘
 - 이번 협약은 협의체가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계층에 세심한 복지 지원을 하기 위해 후원자를 모집하는 '우리동네 행복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함
 - 협약에 따라 대지스파랜드는 내년 7월까지 매월 협의체가 추천한 10가구에 8000원 상당의 목욕탕 이용권을 2매씩 지급키로 했다. 1년에 총 192만원 상당
 - 협의체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이웃 가운데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
 - 동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대지스파랜드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합쳐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죽전3동 맞춤형복지팀)

5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죽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울에스병원 저소득 이웃에 영양수액 지원



- *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2동은 지난 16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순구)와 서울에스병원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영양수액을 지원키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힘
 - 협약에 따라 서울에스병원은 매월 협의체가 선정한 홀로 어르신이나 중증 장애인 등 지역 내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 1명에게 건강상담이나 영양수액 (15만원 상당)을 무료로 지원
 - 서울에스병원 관계자는 “그간 지역주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했다”며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함
 - 박 위원장은 “서울에스병원이 진료만으로도 바쁜 와중에 이웃을 위해 의료 봉사까지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지역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죽전2동 맞춤형복지팀)

6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풍덕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려운 이웃 함께 살아요!’ 안내문 배포



- * 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2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원구)와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김중덕)가 지난 17일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앞에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20일 밝힘
 - 이날 20여명의 참가자들은 지역 내 약국과 미용실, 편의점, 제과점 등 상가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 함께 살아요!’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위기 이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함
 - 이 위원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움을 구할 방법을 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찾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며 “주민들도 생활공동체 차원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풍덕천2동 맞춤형복지팀)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하세요

< 부정수급 전담 신고센터 설치하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및 관리 일원화 >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1551-1290으로 신고!**

부정수급 전담 신고센터 설치하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및 관리 일원화



- *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8월 11일(금)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힘
 - 현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우편·팩스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직접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나, 부정수급 신고 관련 상담, 신고인에 대한 신고포상금 적정 지급, 부정수급 현황 모니터링 등 부정수급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일원화된 신고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새롭게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는 ▲사회보장급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처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
 - 또한 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누구나 유선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도 신규 개설하고 신고상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고 편의성을 개선
 -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유선으로 보건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접수 절차 및 방법, 신고 건에 대한 조사 처리 진행상황, 부정수급 해당 여부 문의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됨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건에 대해 총 1억 4천 8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2022년 1~12월(12개월간) 108건, 1억 4천 6백 만 원 → 2023년 1~7월(7개월간) 59건, 1억 4천 8백만 원
[참고 : 고시 개정 전후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 비교]

2022.10.13. 이전		2022.10.13. 이후	
환수결정금액	포상금 지급액	환수결정금액	포상금 지급액
5백만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1억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5백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150만원 + 5백만원 초과금액의 2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3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1천만원 초과	2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 실시

< 8월 16일부터 60세 이상 국민 대상으로 인지건강상태 등 조사 >

- *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수)부터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에서는 그간 각각 치매 역학조사와 치매 실태조사는 명칭으로 실시하였던 조사를 보다 체계화하여 역학조사(1·2차 조사)와 실태조사(3차 조사)를 연계하여 실시
 - 또한, 일차적으로 60세 이상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지건강과 치매 관련 현황을 파악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명칭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로 함
 -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는 조사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60세 이상 국민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올해 12월까지 진행
- * 조사는 세 단계로 이루어짐, ▲조사대상자의 인지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1차 조사 ▲1차 조사에서 인지저하가 있는 조사대상자에 대해 치매 여부를 확인하는 2차 조사 ▲2차 조사에 따라 치매로 분류된 조사대상자와 가족에 대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3차 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
 - 각 조사 단계별 세부 내용
 - ① (1차 조사) 치매 관련 건강행태(음주, 흡연, 신체활동 등), 건강 및 신체기능(시·청력, 씹기 등) 등 조사, 인지선별검사(CIST) 등 검사
 - 한국형 치매 선별검사로, 지남력·기억력·주의력·언어기능 등 인지기능을 간략하게 평가하여 인지저하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IST)
 - ② (2차 조사) 신경심리검사(CERAD-K, LICA, SNSBII, SNSB-C), 일상생활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평가, 기억력 등 인지저하 증상의 발현 시기 및 양상, 관련 병력, 치매 중증도 등 조사
 - ③ (3차 조사) 치매 진단자와 가족의 경제·사회적 특성, 돌봄 부담, 관련 서비스(예: 치매안심센터) 이용 현황 등 조사
 - 조사 방법은 전문 조사원들이 조사대상자를 방문(거주지, 요양병원, 노인 의료복지시설)하여 수행하는 대면 설문조사로,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2차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에 방문하여 상세 병력 등 설문조사와 함께 치매 진단검사를 받음
 - 보건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치매 환자의 분포 및 유형을 ▲치매 발병 관련 요인 ▲치매로 인한 비용 부담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분석할 예정

붙임1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 개요

- * (법적근거) 치매관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2
- * (조사목적) 치매현황 등 근거를 확보하여 치매 정책 수립에 활용
- * (조사대상) 전국 60세 이상 국민(1차 조사 표본 규모 11,000명)
 - 2·3차 조사대상자 규모는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 * (조사기간) 2023. 8. 16. ~ 12월 *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종료시점 변동 가능
- * (조사방법 및 내용) 치매유병률, 치매 위험요인, 치매로 인한 돌봄 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문항표로 조사원들이 조사대상자를방문하여 설문조사 수행,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실시
 - (1차 조사) 전문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방문(거주지,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 시설)하여 치매 관련 건강행태, 건강 및 신체기능 등 조사, 인지선별검사 (CIST) 등 실시하여 인지저하자 분류
 - (2차 조사) 1차 조사에서 인지저자가 있는 조사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하면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신경심리검사(CERAD-K, LICA, SNSBⅡ, SNSB-C) 등을 실시하여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분류
 - (3차 조사) 2차 조사에서 치매로 분류된 조사대상자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 건강, 사회·경제활동, 생활환경, 가족(보호자)의 돌봄 부담 등 실태 조사

조사 단계	1단계 (1차조사)	2단계 (2차조사)	⇒	3단계 (3차조사)
	< 역학조사 >			< 실태조사 >
조사 대상자	60세 이상(일반)	인지저하자	2차조사 완료자	치매 진단자 및 가족
주요 조사 내용	· 건강행태(음주, 흡연, 운동, 영양, 두부외상, 우울 등) · 인지선별검사	· 치매 진단검사 · 상세병력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또는 서면검토 후 전문가 패널에서 치매사례 분류	· 치매 진단자 및 가족의 경제·사회적 특성 · 돌봄 비용, 돌봄 부담 · 관련 서비스 이용 현황

- (조사·연구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3차 조사 수행 : 조사전문기관(한국갤럽조사연구소)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3 중앙정부 복지현안

20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144명 조사 결과 121명 생존 확인, 7명 사망 확인, 15명 수사 중

<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없도록 필요한 대책 마련 추진 >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출생(1.1.~5.31.)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44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7.28.~8.7.)를 완료,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2023년 출생(1.1.~5.31.)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7월 28일(금)부터 진행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

(단위 : 명)

구분	지자체 확인완료						수사의뢰 (지자체 → 경찰)			
	소계	생존 확인(113)			사망 확인	의료 기관 오류	경찰 수사 (24, 8.11. 기준)			
		출생 신고 완료	출생 신고 예정	해외 출생 신고			수사 중	수사 종결		
								생존 확인	사망 확인	
144	120 (83.3%)	92	19	2	6	1	24 (16.7%)	15	8	1

(1) 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 등을 확인한 경우 : 120명

- 총 144명 중 지자체는 120명(83.3%)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
 -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113명 중 ▲출생신고 이미 완료 92명 (81.4%), ▲출생신고 예정 19명(16.8%), ▲해외 출생신고 2명(1.8%)
 - 출생신고 예정 아동(19명)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14명(73.7%),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출생신고 지연 3명 (15.8%), ▲기타 2명(10.5%)
 - 해외 출생신고(2명)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망 아동 6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 진단서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
 -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 1명은 출생신고가 이미 완료된 이후 맞은 BCG 예방접종 날짜를 임시신생아번호로 오등록한 경우

(2)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경우 : 24명

- 지자체는 총 24명(16.7%)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범의범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
 -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17명(70.8%),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6명(25.0%),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명(4.2%)

- 경찰은 현재 2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9명, 이 중 사망 아동 1명의 보호자는 범죄와 연관되어 검찰에 송치
-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21명, 사망 확인 7명, 수사 중 15명, 의료기관오류 1명이다.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종합 결과 >

(단위 : 명)

소계	생존 확인	사망 확인	수사 중	의료기관오류
144	121	7	15	1

(3)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113명) 정보 및 보호자 정보

-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113명의 양육상황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양육 109명(96.5%), ▲시설입소 2명(1.8%), ▲친인척 양육 2명(1.8%)
- 조사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6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16건

< 서비스연계 사례 >

■ 보호자 A씨는 소송 진행 중으로 인해 출생신고가 지연되었다. 보호자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을 완료하였고, 보건소 담당자에게 사례를 연계하여 예방접종·건강검진 지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5명(3.5%), ▲20대 35명(24.3%), ▲30대 이상이 104명(72.2%)

[출산 당시 보호자 연령]

(단위 : 명)

소계	10대	20대	30대 이상
144	5	35	104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4 중앙정부 복지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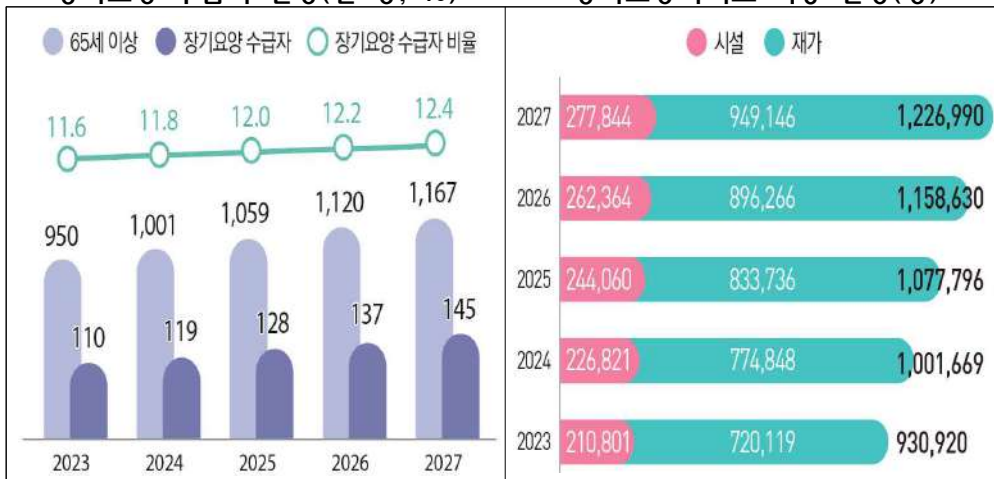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나선다

< 2027년 장기요양수급자 145만 명(노인인구 대비 12.4%) 시대 적극적 대비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 발표 >

- *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장기요양 분야 가입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본계획 추진단의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고, 공청회(6.16)와 장기요양위원회(8.17)를 거쳐 확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102만 명('22.12월)의 수급자가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27,484개소로서 제도 초기에 대비하여 수급자와 인프라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함
 - [수급자] ('08) 21.4 → ('12) 34.2 → ('17) 58.5 → ('22) 101.9만 명
 - [기관] (시설) ('08) 1,700 → ('12) 4,327 → ('17) 5,304 → ('22) 6,150개소
 - (재가) ('08) 6,744 → ('12) 10,730 → ('17) 15,073 → ('22) 21,334개소
 - 2027년까지 장기요양 수급자는 14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가 94.9만 명, 시설 27.8만 명 등 서비스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장기요양 수급자 전망(만 명,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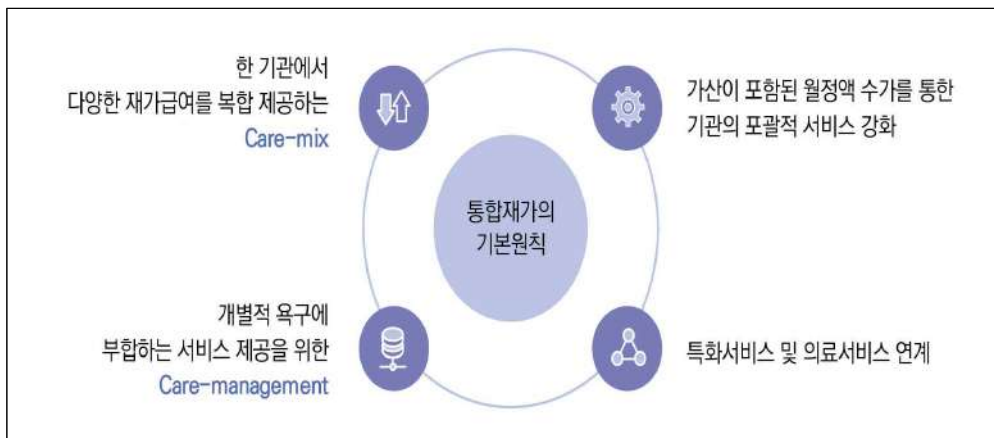


※ 장기요양 단기'23~'27 · 장기'23~'70 추계(건강보험연구원)

- *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을 목표로 설정, 이를 위해 4개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를 마련함

1.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
 - (예) 1등급 월 한도액 재가급여 1,885,000원, 시설급여 2,452,500원('23)
 - 또한,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가고자 함
 -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 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하며,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 통합재가서비스 추진 방향 >



- 이외에도 올해 4분기부터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을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산
- * 한편,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일부 지역(건보공단 운영센터 65개소)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올해 8월부터 전국(227개소)으로 확대하고,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 2024년부터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지며,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 가능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계획(안)]

현 행('23) : 치매가족휴가제		개선안(~'25)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대상	치매수급자		중증수급자
	치매가 있는 1·2등급 수급자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연간 이용 기준	단기보호 9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18회	단기보호 9일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4회

- 이 밖에도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며,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 (現)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재택 의료센터(의료기관)에서 정기적 방문진료와 간호 등을 제공(28개소 운영 중)

2.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 * 노인인구 1천만 명('24)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형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지원, 또한 국가건강검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도 추진
-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가 재가수급자를 매월 방문하여 급여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한 후 건보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 건보공단은 적정 급여 관리뿐 아니라, 급여점검 등을 통해 급여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 지자체는 사례회의를 운영하면서 추가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연계 등을 총괄함
- * 한편,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상황을 고려한 적정급여 결정 모형과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등을 개발하고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 (현행 신체기능 중심(1~4등급), 치매환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관계 없이 등급에 진입하는 방식(5, 인지지원등급)을 인지 기능을 포괄하는 ADL 평가 방식으로 개편 추진)

- 아울러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하여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자와 가족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지원, 또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이 복지용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3.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 * 지난 15년간 크게 성장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함
 - 우선, 공급부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민간요양시설을 확충, 공립 노인 요양시설 53개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
 - (예) 현행 토지·건물 소유 의무 → 특정 지역,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 등 조건으로 임차 검토
 - 아울러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 유니트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 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 (예) 사생활 보호 및 개인물건 배치를 위한 침실 면적 확대, 유니트별로 거실·식당 등소규모 공용 공간 마련, 돌봄인력 배치 확대 및 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실시
- * 한편,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축소, 또한 2024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하여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다 숙련된 서비스 제공을 지원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 2.5:1(기존)→2.3:1(‘22.10~)→2.1:1(‘25))

 - 장기요양기관 진입 시 대표자의 역량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내실화 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상시적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 또한 2025년 12월부터는 그간의 기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실운영기관의 퇴출 기반을 마련함
 - 이 밖에도, 전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 외에도 하위기관 수시·재평가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다양화 등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할 예정
 - 아울러 올해 6월 시행된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 현장조사 등도 강화,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하고, 현장조사 거부·방해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하위법령 개정('23.6.22 시행)으로, 신규 기관은 '23.6.22부터, 기존 기관은 '23.12.2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 등 지원,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거주 외국인력 등 활용방안,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 또한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 확대(240→320시간) 등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

4.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요청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를 위해 늘어나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급여 사전·사후관리 등을 강화함
 - 고령화 속도나 국민부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법정 국고지원(보험료 수입의 20%)을 확보 하면서 추가 재원 발굴 등도 폭넓게 검토하고자 함
- * 한편,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감시·자정 기능도 고도화, 현지조사 자율 점검제를 도입하여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공익신고(794건, '22) 활성화, 정기·수시 현지조사 확대 등도 추진
 -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장기요양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도 적극 지원하고자 함, 또한 장기요양위원회의 단일 실무위원회 체계 등 현행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확대를 추진
 - 지금까지의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예정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5 중앙정부 복지현안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1) >

< 출생미신고 아동,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 >

- *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 가능
 - (임시신생아번호)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
 - (임시관리번호)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

붙임

e아동행복지원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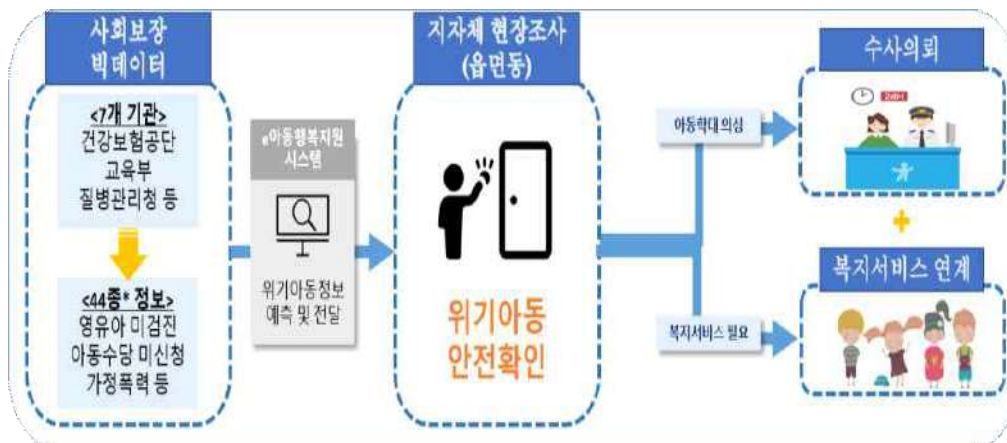
- * (목적)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기에 처했을 수 있는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위기아동 조기 발견·예방
(예방접종미접종, 건강검진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
- * (내용)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 → 필요 시 복지서비스 등 연계·제공, 학대 신고 등 처리
- * (대상) 18세 미만인 아동 중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 아동(분기별 3만 명)
 - 분기별 ①모형(AI)을 통한 발굴 약 2.5만 명, ②기획 발굴 약 5천 명
 - (모형(AI)통한 발굴) 44종의 정보 및 분기별 조사결과 등을 모형이 학습하여, 위기아동을 발굴(머신러닝, 딥러닝방식)
 - (기획발굴) 모형발굴 외 특정위기변수 조건 대상자 등을 발굴(위기변수 변경가능)
 - 위기아동 총 3만 명의 규모는 제한된 지자체 담당자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 → ‘23년 1차부터 총 3만 명 (모형발굴 2만 5천 명, 기획발굴 5천 명) 확대 시행
- * (조사 시기) 분기별 시행 (1, 4, 7, 10월)

[[e아동행복지원사업 분기별 시행 내용]

1차(1월)	2차(4월)	3차(7월)	4차(10월)
모형발굴 + 기획발굴			3세 전수조사

* (조사 주체) 읍면동 공무원(아동 담당 및 맞춤형 복지 담당자 협업)

[e아동행복지원사업 운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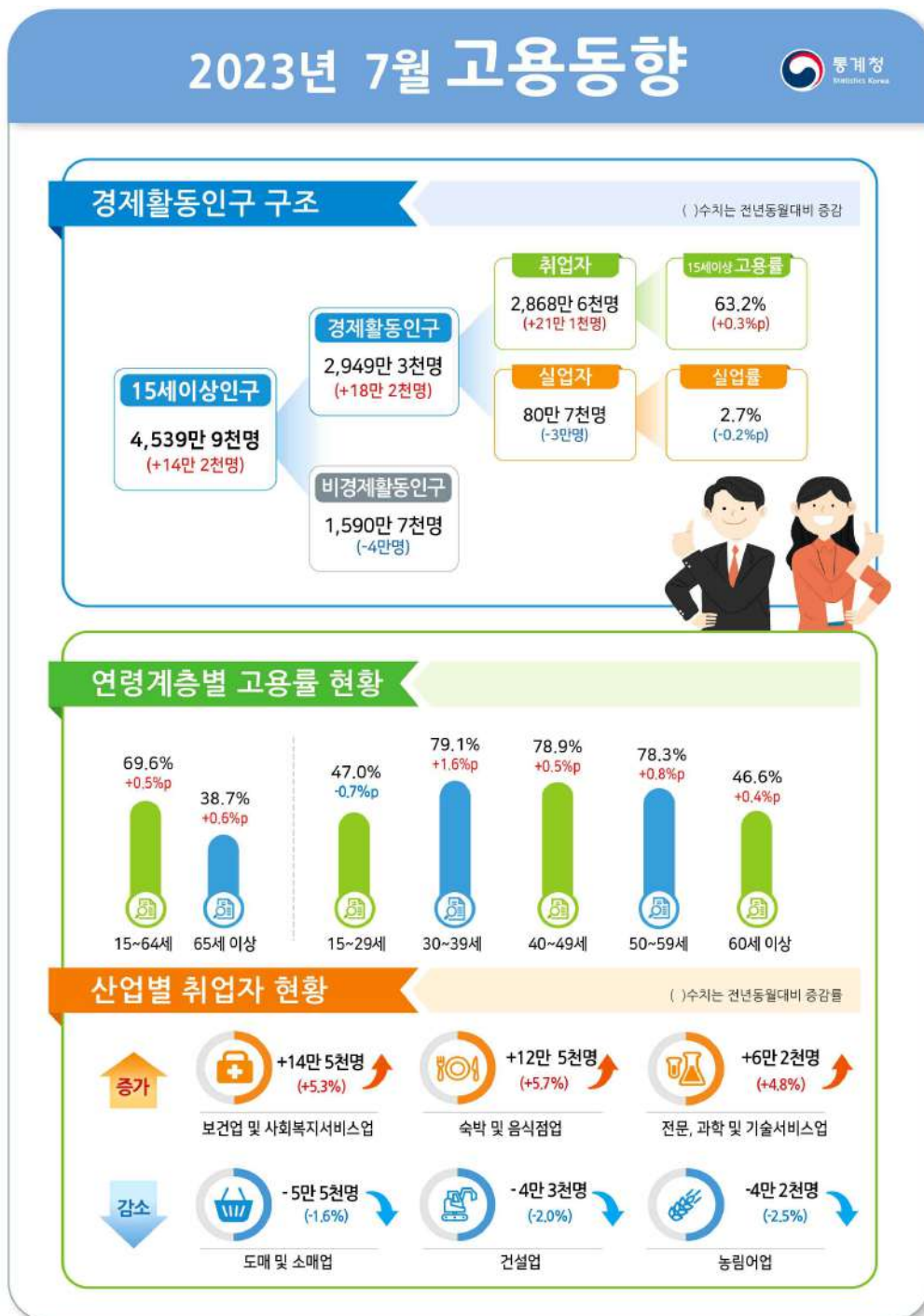


※ 보도자료 참조(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3년 7월 고용동향



※ 자료 : 통계청 자료(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